

행 정 자 치 부

시정·주의 요구

제 목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인 교육비 지원 부적정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사천시

내 용

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고 제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별 예산을 편성할 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계상(計上)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

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이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교육훈련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

또한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(안전행정부 훈령, 2013. 3. 25.)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퇴근 후 대학(방송통신대학 포함)·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다.

그러나 정부합동감사기간(2016. 11. 14.~11. 30) 동안 사천시 공무원의 대학교 및 대학원 학위과정 위탁교육훈련계획 및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위탁교육훈련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또한 관련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

2014년도에 지방○○○ ○○○에게 (석사)학위과정 교육을 위한 교육비

853,200원을 지원함으로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

[시정]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육비 853천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의] 학위과정 위탁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규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